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06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 (정부안, 박수민의원안)	3

I. 개요

1.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06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수민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10. 30.
- (3) 회 부 일 : 2024. 10.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경단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와 통관보류 등 통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방위사업청(방산기술)·경찰청(영업비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 8월까지 산업·방산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피해가 632건에 이르렀고,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되다 적발된 사례도 96건에 이룸.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세관에서 통관통제 혹은 보류되는 적발사례는 0건에 그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에는 적발되더라도 기업의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관 단계에서 인지하더라도 세관장이 통관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저작권 등 외부에 공개된 권리 형태에 한정하여 보호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정부가 국가안보·국내산업 발전 등 공익 목적으로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첨단기술은 영업비밀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기술, 방위 산업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경에서 기술유출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제1항 및 제5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방위산업 기술 추가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박수민의원안
☐ 지식재산권 보호 (§235) ☐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 <추 가>	☐ 보호대상 추가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등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기술 *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 한 것	☐ 보호대상 추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기술 *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 한 것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 (통관보류)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직권으로 통관보류 가능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등	☐ (현행과 같음)
☐ (통관보류의 요청 가능)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통관보류나 유치 요청 가능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등	☐ (현행과 같음)
☐ (통관보류 및 유치		

현행	정부안	박수민의원안
해제의 요청) 요청받은 물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되, 화주 및 수출입신고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해제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통관 허용 및 유치 해제 가능 - (예외)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붙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 - <추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 산업 기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 기술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 산업 기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 기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산업기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임을 알고 취득한 영업비밀 ○ 시행일: 이 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박수민의원안 2024. 10. 30. 제출 (의안번호 5063),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등의 해외 유출은 국경단계에서 차단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한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박수민의원안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¹⁾,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이하 ‘산업기술’)²⁾,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³⁾을 지식재산권에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수출입신고된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⁴⁾할 수 있도록 하며, 수출입

1)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하며,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에 따라 8대 분야 45개 분류 128개의 방위산업기술이 지정되어 있음(예: 고감도 레이더 송수신 기술, 어뢰 음향대항 기술 등).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4) 통관보류는 통관대상 물품 일반에 대한 통관절차의 보류를 의미하며, 유치는 여행자 휴대품이나 승무원의 휴대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용어임.

신고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거나 ②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기술인 경우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안은 현행법 제235조제1항에 명시된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⁵⁾을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며, 수출입신고된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⁶⁾은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권리자 요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거나, 세관장 직권에 의하여 통관을 보류하는 절차 등을 두고 있음.⁷⁾ 그런데 이러한 지식재산권

5)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하며,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에 따라 8대 분야 45개 분류 128개의 방위산업기술이 지정되어 있음(예: 고감도 레이더 송수신 기술, 어뢰 음향대향 기술 등).

6)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권리 사전신고에 따른 통관보류) 법 제235조제2항·제3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권리자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 세관장은

에 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이하 ‘방위산업기술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등을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현재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유출 시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사전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현재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⁸⁾ 그러나 현행법상 방위산업기술등을 침해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이를 통관 보류하거나 유치하는 등 사전에 차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화주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요청에 의해 통관 보류되거나 유치된 물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는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으로서 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신고자에게 수출입 사실을 통보하고, 권리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②(권리자 요청에 의한 통관보류) 동조 제4항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셋째, ③(세관장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 동조 제7항은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

- ▶ (주)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하려는 일당 5명 적발
- ▶ 수출 예정인 에어나이프 3대를 압수하여 해외 철강사의 부당이익 최대 6,600억원 차단

8)

자료: 관세청,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 국경에서 차단”, 2024.1.5.

한 방위산업기술등과 ②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등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등을 추가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등이 지식재산권 등으로서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박수민의원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관세법」상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영업비밀을 포함하여 세관장에 의한 통관보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상표법」 등 개별법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져 침해 여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한 상표권 등과는 달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법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여부에 대한 세관장의 법적 판단에 의하여 통관보류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려던 자의 재산권 등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특히 현행법령상 세관장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의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로 인하여 수출입업자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방업기술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호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있으나, 「지식재산 기본법」상 정의⁹⁾에 비추어 방위산업기술등 중 영업비밀의 경우 지식 재산으로서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부안과 같이 그 보호의 범주를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방식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9)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